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1. 28.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어르신동행과장

가. 제안이유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의 위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사무
-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한 조례」 제5조

-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계획(안) (어르
신동행과- 100194, '23.11.8.)

나)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 및 운
영으로 '효도숙식경로당' 대상 효율적인 인력·시설 관리 및 사업 추진의 능
률성 확보

3)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및 시설관리

가)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및 시설·안전 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

나)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인력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돌봄 서비스제공, 돌봄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위탁시설 개요

가) 소재지: 마포구 서강로1길 30

나) 건물규모: 지상1층~5층(연면적 1047.08㎡)

다) 시설규모: 지상2층(258.40㎡), 지상3층(257.66㎡)

라) 입주정원: 16명(남 8명, 여 8명)

마) 층별현황

구 분	면적(㎡)	시설물 현황	비 고
합 계	1,047.08		
5 층	30.93	옥상	
4 층	238.16	창전데이케어센터	
3 층	257.66	효도숙식경로당 사업대상지	· 각 층별 개인침실 8호 ·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
2 층	258.40	효도숙식경로당 사업대상지	
1 층	261.93	경로당, 사무실	

바) 기타사항: 2024. 2.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

5) 위탁기간: 3년(2024. 4.~2027.3.)

6)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53,786천원(구비 100%)

나)산출근거: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참고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비고
계	53,786		
인건비	30,186	· 사회복지사 인건비 3,354,000원*1명*9개월=30,186,000원	
사업비	7,200	· 사업비 100,000원*2시간*4회*9개월=7,200,000원	
운영비	16,400	· 일반운영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70,000원*5명*3회=1,050,000원 업무추진비 50,000원*9개월=450,000원 사무관리비 100,000원*9개월=900,000원 · 시설운영비 물품(가구)구입비 5,000,000원 공공요금 1,000,000원*9개월=9,000,000원	

※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감안, 2024년 사업비는 9개월 기준 산출, 차년도부터 12개월 기준 산출 및 예산 편성 예정

8) 추진일정

- 가) '23. 11. ~ '24. 2. :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 나) '24. 1. ~ 2. : 위탁기관 선정 계획 수립 및 공개모집, 위탁 협약 체결
- 다) '24. 2. ~ 3. : 입주대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입주계약 체결
- 라) '24. 4. :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개소·입주, 위탁운영 개시

다.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민간위탁 사무는 「노인복지법」 제 4조 및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운영 계획(안)(어르신동행과-100194, '23.11.8.)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과 관리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사무의 위탁을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노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며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시설의 운영) 구에서 직접 설치한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2023.3.9.>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